

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개정이유

- 법령에 근거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주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법령에 근거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생활폐기물 배출자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. (안 제8조)

□ 검토의견

- 행정편의를 위해 주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개선하는 것으로써 법령적합성이나 내용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